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426
----------	-------

발의연월일 : 2025. 11. 20.

발 의 자 : 전현희 · 김우영 · 이성운
김영환 · 홍기원 · 황운하
김병주 · 박해철 · 한준호
권칠승 · 박은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징계의 종류로 영구제명, 제명,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의 다섯가지 종류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불출석 등 불성실한 변론 태도를 보여주거나 전관예우를 강조하는 광고를 하거나 사건수임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을 반환하지 않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법률서비스 이용 소비자들의 피해 역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에서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법무법인 등에 대한 과태료로는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고 정직 역시 법무법인 등에 대하여서는 징계수단이 되지 못하며 문제적인 행태를 보이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에 관하여 법률소비자인 의뢰인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등 징계의 수준이 매우 불충분하여 법률소비자인 의

퇴인 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의 종류로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 대한 업무정지를 추가하고, 법무법인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별도로 두며, 위법한 사건수임계약 후 의뢰인에게 수임료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를 입히거나 징계나 진정 건수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많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사건의뢰 주의 대상 변호사(법무법인 등)으로 지정하고 지정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소비자인 의뢰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0조 등).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섯”을 “여섯”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징계는 다른 징계와 병과할 수 있다.

제90조제3호 중 “정직”을 “정직.”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징계의 대상이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 및 제117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업무 정지로 한다.

제90조제4호 중 “과태료”를 “과태료.”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징계의 대상이 법무법인등인 경우에는 10억원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연매출액(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징계사유 발생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6.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의 사건의뢰 주의 대상 변호사로의 지정 및 지정사실의 공개. 이 경우 징계의 대상이 법무법인등인 경우에는 사건의뢰 주의 대상 법무법인등으로 지정하여 공개한다.

제9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법한 사건수임 계약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의뢰인에게 수임료 반환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징계처분·제97조의2에 따른 징계개시의 신청·제97조의3에 따른 징계개시의 청원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55조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건수가 통상적인 건수보다 많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90조제6호에 따른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제98조의5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90조제6호에 따른 지정사실 및 지정사유는 해당 징계처분에서 정하여진 기간 동안 공개한다.

제11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에”를 “제4항까지에”로 한다.

④ 제90조제3호 단서에 따른 업무정지 결정을 위반한 법무법인등에게는 10억원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연매출액(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징계사유 발생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 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u>다섯</u> 종류로 한다. <후단 신설>	제90조(징계의 종류) ----- ----- <u>여섯</u> ----- ---. <u>이 경우 제6호의 징계는 다른 징계와 병과할 수 있다.</u>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 3년 이하의 <u>정직</u> <후단 신설>	3. ----- <u>정직. 이 경우 징계의 대상이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 및 제117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로 한다.</u>
4. 3천만원 이하의 <u>과태료</u> <후단 신설>	4. ----- <u>과태료. 이 경우 징계의 대상이 법무법인등인 경우에는 10억원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연매출액(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징계사유 발생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u>

5. (생략)

<신설>

제91조(징계 사유) ① · ② (생략)

<신설>

에 해당하는 금액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5. (현행과 같음)

6.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의 사건의뢰 주의 대상 변호사로의 지정 및 지정사실의 공개. 이 경우 징계의 대상이 법무법인등인 경우에는 사건의뢰 주의 대상 법무법인등으로 지정하여 공개한다.

제91조(징계 사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법한 사건수임계약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의뢰인에게 수입료 반환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징계처분·제97조의2에 따른 징계개시의 신청·제97조의3에 따른 징계개시의 청원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55조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건수가 통상적인 건수보다 많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90조제6호에 따른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제98조의5(징계의 집행) ① · ②
(생략)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처분을 하면 이를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 ⑤ (생략)

제117조(과태료) ① ~ ③ (생략)

<신설>

제98조의5(징계의 집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이 경우 제90조제6호에 따른 지정사실 및 지정사유는 해당 징계처분에서 정하여진 기간 동안 공개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17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90조제3호 단서에 따른 업무정지 결정을 위반한 법무법인등에게는 10억원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연매출액(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징계사유 발생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u>제3항까지</u>에 따 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검 사장이 부과·징수한다.	⑤ -----<u>제4항까지</u>에----- ----- ----- -----.
---	---